

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.

<보도 내용 (경향신문 등, 5.17) >

- ◆ 정부 요구조건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는 5명 중 1명도 안돼...피해자들의 호소
 - 정부·여당이 제시한 특별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10명 중 2명도 안된다며, ‘선구제 후회수’ 방안의 특별법 제정 요구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하여,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

- 수정안에서는 대항력·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하였으며, 이는 세 가지 요건*(대항력, 확정일자, 임차권 등기)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* 피해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: 대항력·확정일자를 갖춰야 함
계약기간 종료로 퇴거한 임차인 : 임차권등기를 갖춰야 함

- 또한,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.5억원(150% 범위)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('23.4월)를 분석한 결과,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주택임차인보호과	책임자	과 장	이장원 (044-201-3321)
		담당자	사무관	문수빈 (044-201-4150)